

배제할 수가 없다. 만에 하나라도 편견을 가지고 중재업무에 임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에도 위배됨은 물론 피해자를 억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의 분포 상 언론인 출신이 많은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언론중재위원의 위촉규정 중 제3호의 규정은 제4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6. 신청층의 확대

충북중재부의 경우 과거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는 층은 언론사와 공공기관 등이 주를 이루었다. 즉 언론사 대 언론사, 언론사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기관내지 단체의 청구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언론조정 신청인 층이 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론 언론사에 대한 일반인의 신청이 부재하거나 극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권위와 막강한 조직력을 구비하고 있어서 언론사와 대항하기 쉬운 반면, 일반인은 언론사의 높은 문턱(영향력, 파급력, 보복성)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탓과 아직까지 개인들의 권리주장에 소극적인 풍토 때문이라고 본다. 일반인의 신청이 미미하다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만큼 언론에 대한 국민권리의 창구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수비적, 제재적 위치(자세)에서 선제적, 보호적 자세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신청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문보도내용을 보고 사실에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전화를 비롯한 의사전달 통로를 이용, 언론중재위에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는 계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함으로써 신청층을 두텁게 하여야 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언론중재제도의 탄생 근거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그리고 기구 등을 살펴 본 후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과제에 관하여 논급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설치배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여 도입된 언론중재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

관이다.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언론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장치는 현대와 같은 주권재민(主權在民)시대에 꼭 필요한 기구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인권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중립성·독립성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수요자 및 국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누구보다 성숙한 판단력을 구비하여야 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갖대로 하여 중재위원이 선정되어야 하고 언론사 및 공공기관의 이용층을 일반인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든 정부기관이 그러하듯, 언론중재위원회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나 공공기관만이 사용하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연기자(주역)로 하는 국민의 무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국민의 법익보호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미래는 정보의 시대이다. 언론은 정보의 최고 수단이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첨병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언론매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세계나 다름없을 것이다. 언론이 암흑을 불사르고 대명천지(大明天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언론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무엇보다 언론은 언론에 주어진 자유만큼 공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을 성역시하여 그 경계를 지키며 쓰여지고 보도하는 기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언론이 지켜야 할 절대 수칙이다. 국민은 건강한 언론(사회목탁)을 바란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엄정한 중재를 원한다.

## 참 고 문 헌

- 권혁남, “언론중재법시행에 따른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와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6.
- 김종배,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5.
- 김창룡,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4.
- 박종호, “공동선의 잣대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회보, 2005.
- 석희태, “언론중재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6.
- 양경승, “언론중재법의 개정 쟁점과 방향”,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6.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편람, 2005.
- 조수정, “언론중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워크샵자료, 2004.
- 황용경, “새로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자료, 2005.